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11 발의연월일: 2021. 4. 15.

발 의 자:이원택・이규민・주철현

이상헌 · 송재호 · 양정숙

임호선 · 김종민 · 안병길

위성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농수산대학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 정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농어업 전문대학으로, 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제명을 「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」으로 변경하고, 이에 따른 용어 등을 정 비하며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명,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등).

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농수산대학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"을 "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한국농수산대학"을 "한국농수산대학교"로 한다.

제2조 중 "한국농수산대학을"을 "한국농수산대학교를"로 한다.

제3조 중 "한국농수산대학은"을 "한국농수산대학교는"으로 한다.

제4조 중 "한국농수산대학"을 "한국농수산대학교"로 한다.

제5조 중 "한국농수산대학을"을 "한국농수산대학교를"로 한다.

제5조의2제2항 중 "한국농수산대학"을 "한국농수산대학교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한국농수산대학"을 각각 "한국농수산대학교"로 한다.

제7조 중 "한국농수산대학"을 각각 "한국농수산대학교"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한국농수산대학"을 "한국농수산대학교"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한국농수산대학"을 "한국농수산대학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한국농수산대학을"을 "한국농수산대학교를"로, "한국농수산대학의"를 "한국농수산대학교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한국농수산대학을"을 "한국농수산대학교를"로, "한국농수산대학의"를 "한국농수산대학교의"로 하고. 같은 조 제5항 중 "한국농수산대학"을 "한국

농수산대학교"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"한국농수산대학"을 각각 "한국농수산대학교"로 한다.

제10조 중 "한국농수산대학을"을 "한국농수산대학교를"로 한다. 제11조제1항 중 "한국농수산대학"을 "한국농수산대학교"로 한다. 제12조 중 "한국농수산대학"을 "한국농수산대학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한국농수 산대학 설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본다.
- 제3조(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 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.
- 제4조(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 다.
- 제5조(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

대학교가 승계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	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
제1조(목적) 이 법은 정예 농어업	제1조(목적)
인력의 양성을 위한 <u>한국농수산</u>	<u>한국농수산</u>
<u>대학</u> 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	<u> 대학교</u>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	
다.	
제2조(설치) 농어업부문에 종사할	제2조(설치)
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	
을 교수 · 연마하여 이론과 실	
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	
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	
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	
한국농수산대학을 둔다.	한국농수산대학교를
제3조(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)	제3조(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)
한국농수산대학은 「고등교육	한국농수산대학교는
법」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	
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	
고,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	
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「고등교육법」 제49조의	
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	
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	
제4조(입학자격) <u>한국농수산대학</u>	제4조(입학자격) <u>한국농수산대학</u>

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
제5조(학위의 수여) <u>한국농수산대</u> <u>학을</u> 졸업한 자에게는 「고등 교육법」 제50조의 규정에 따 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.

제5조의2(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) ① (생 략)

②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이 제1 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 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영 하려는 때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5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수산 관련 학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 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~ ④ (생 략)

제6조(교과 및 수업) ① <u>한국농수</u>
<u>산대학</u>에 설치하는 계열·학과
및 교육과정은 <u>한국농수산대학</u>
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되, 교과

<u> </u>	-
	-
	-
	-
· 제5조(학위의 수여) <u>한국농수</u> 산대	1
학교를	_
<u>7 44 </u>	
	-
제5조의2(전공심화과정에 대한	-
학위수여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한국농수산대학교	-
	-
	-
	-
	-
	-
	-
③ ~ ④ (현행과 같음)	
제6조(교과 및 수업) ① <u>한국농수</u>	_
<u>산대학교</u>	-
한국농수산대	
학교	-

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,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(생략)

- 제7조(교직원) <u>한국농수산대학</u>에 <u>한국농수산대학</u>의 장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
- 제8조(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) ①(생 략)
 - ② <u>한국농수산대학</u>의 장과 교 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학비지원 및 조건이행) ①
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, 실습비・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

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교직원) <u>한국농수산대학교</u>
- <u>한국농수산대학교</u>
제8조(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)
①(현행과 같음)
② 한국농수산대학교
제9조(학비지원 및 조건이행) ①
한국농수산대학교

할 수 있다.

- ② <u>한국농수산대학을</u> 졸업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와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<u>한국농수산대학의</u>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 중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기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(생 략)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 항의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한국농수산</u> 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한국농수산대학교를
한국농수산대학
교의
③ 한국농수산대학교를
<u>한국농수산대</u>
학교의
 ④ (현행과 같음)
⑤
<u>한국농수산</u>
대학교

⑥ (생략)

제9조의2(자료제공의 요청) ① 한 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 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제9 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「국 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0조(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)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 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전 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.

제11조(부설교육기관 등) ① <u>한국</u> <u>농수산대학</u>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 권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 기관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

⑥ (현행과 같음)
제9조의2(자료제공의 요청) ① <u>한</u>
국농수산대학교한국농수
산대학교
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)
한국농수산대학교를
제11조(부설교육기관 등) ① 한국
 농수산대학교

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	
설을 둘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저	제12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
협조 요청) <u>한국농수산대학</u> 의	협조 요청) <u>한국농수산대학교</u>
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	
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	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

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

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